

3.3 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인센티브에관한시행세칙

2007. 5. 18 제정
2007. 6. 1 제1차 개정
2007. 8. 14 제2차 개정
2007. 10. 11 제3차 개정
2008. 6. 19 제4차 개정
2014. 1. 7 제5차 개정
2021.3.25. 제6차 개정

제 1조 (목적) 이 운영세칙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(이하 연구단) '인센티브관련운영세칙' 제8항에 근거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인센티브 지급 기준)

- (1) 연구단에 제출된 학술활동 및 수상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
- (2) 학술실적의 경우 주저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- (3) 대학원생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- (4) 수의·축산·생물·의료 및 유관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의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3조 (학술실적 기준)

- (1) SCI논문, 비SCI논문 발표 실적
- (2) 국내학회 및 국제학회 발표 실적
- (3) 수상실적

제 4조 (인센티브 금액의 변경) 인센티브의 지급 금액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재조정 할 수 있다.

제 5조 (기타)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BK21 FOUR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.